

[사 건 명] 행심 2018 - 53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2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0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2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8. 09. 16. 청구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에게 ‘서로 애인도 없는 입장이니 연인인 척 해보자.’ 라는 제안을 했고, ■■■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제안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 제안을 하여 영화를 보면서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고 영화가 끝날 무렵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받기된 것을 풀어달라고 하였고 ■■■의 집 앞에서도 포옹을 하며 키스를 요구하였으나 ■■■는 이를 거절하였고, 다음날 청구인은 ■■■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 청구인의 사과를 받지 않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다.

나. ■■■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 □□□, ■■■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당한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1) ○○○의 학교폭력 신고 내용

평소에 ◇◇◇은 ○○○의 상의 셔츠 맨 위 단추 하나를 채워주면서 ‘가슴이 보이니 단추를 채우고 다녀라’ 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2018. 5. 27.경 지하철을 타고 동아리 봉사를 갈 때 청구인은 지하철 안에서 ○○○의 가슴 쪽을 계속 쳐다보며 가슴근처 교복을 만지고 허리 라인 부근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2) □□□의 학교폭력 신고 내용

2018. 8. 25.경 동아리 활동을 위해 홍익대학교에 갔을 때, 청구인과 식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은 인도 안쪽으로 안전하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의 안쪽으로 이동하여 차 조심하라고 하면서 어깨와 팔뚝을 쓰다듬듯이 잡아당겼으며, □□□이 자신을 만지지 말라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3) ■■■의 학교폭력 신고 내용

2017년도 2학기 때 ●●●, ■■■ 및 청구인 등 3명이 공포영화를 보러갔는데, 영화를 보던 중 청구인이 영화가 무섭다며 옆에 앉아 있던 ■■■에게 안기고 손을 잡자며 붙어 있었는데, 그 이후 청구인이 위 ●●●에게 전화하여 영화 볼 때 ■■■의 가슴에 자신이 얼굴이 닿았고 성기가 발기되었다는 말과 ■■■의 가슴이 크다는 말을 하였고, 청구인이 ●●●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2018. 10. 1. 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가 개최되어 위 ■■■, ○○○, □□□ 및 ■■■에 대한 청구인의 학교폭력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분 수위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

대해서 출석정지 25일 및 심리치료(병과) 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2018. 10. 2.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출석정지 25일 및 심리치료(병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8. 본 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1. ■■■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한 주장

가. 청구인은 당시 ■■■에게 영화를 보러가자고 하였는데 ■■■에게 “서로 애인이 없으니 커플 역할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가 승낙을 하여 영화를 보면서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했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영화가 끝난 후에 ■■■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영화가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의 집 앞에서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니 ■■■가 스킨십을 허락은 했어도 실제 애인사이가 아님에도 자신의 행동이 과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다음날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가 청구인의 사과를 거절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은 서로 간에 강제성이 없었고, 성기가 발기된 것을 풀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으며, 영화관에서 가슴을 만진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면 서로 웃으며 청구인이 ■■■를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적극적인 포용도 없었을 것이며 집 앞에서의 키스도 ■■■가 거절의사를 밝혀 청구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 ■■■를 바래다 준 후에도 ■■■와 문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다.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평소 학교생활이나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

고, 관련 학생들의 진술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을 관련학생이 아닌 가해학생으로 정하고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

라.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임에도 청구인만 가해자가 되었고, ■■■가 학폭위에서 흘린 눈물로 인해 기성세대인 학폭위 위원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마. 이번 조치 결과로 인해 청구인은 여성에 대한 믿음이나 이성 간의 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대학 진학에도 어려움이 있고 가족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2. ○○○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의 풀어진 단추를 채워 준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슴이 보일 것 같아서 단추를 채우라고 말을 한 것이고, ○○○의 하복 셔츠가 많이 작아보여서 “셔츠가 작지 않나” 고 물어본 것이고, ○○○의 가슴을 쳐다본 적도 없으며 셔츠 허리 부근을 만진 적도 없다고 하며, ■■■에 대한 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자 ○○○이 몰타기 식으로 말하면서 과장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3. □□□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과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밥을 먹으러 갈 때 주위에 사람과 차가 많아서 자신의 손을 내 밀면서 □□□을 피하게 한 것이고, □□□의 어깨에 계속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은 자신 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며, 당시에는 □□□이 아무 말이 없다가 ■■■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가 되고 ○○○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제 와서 당시 있었던 일이 불쾌하다는 소문을 내고 떠돌고 다니는 것을 보니 억울하다고 한다.

4. ■■■■■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영화를 볼 때 자신의 머리가 ■■■■■의 가슴에 닿게 된 것은 영화가 무서워 ■■■■■ 쪽으로 머리를 기울였을 때 ■■■■■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눌러서 닿은 것이며, ○○○○는 ■■■■■와 자신의 가슴 중에서 누구의 가슴이 더 크냐고 묻거나 여학생들 가슴 크기 순위를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것이며, 당시 일은 ■■■■■에게 사과를 하고 끝낸 일인데,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가 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난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대해 부인하거나 억울해 하고 있고,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평소 청구인이 상대 여학생들에게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한 행동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행동은 피해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 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해 즉시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동은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강제성이 없었고 ■■■■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의 요구(키스해달라는 것, 받기된 것을 풀어달라는 것)를 거절한 것을 보면 표현 방법이 서투라서 청구인에게 정확한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는 정신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다.

4.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평소 같은 학급 여학생들에게 스킨십을 자주 하는 학생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어떤 의도가 없었더라도 스킨십을 당한 일부 여학생들은 불쾌해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는 학폭위 진술 당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이에 학폭위 위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

6. ○○○, □□□, ■■■■의 사안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인정하지 않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과 ■■■■는 사안 발생 이전부터 청구인과 친밀한 사이여서 청구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신고한 것이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피해학생들에 대한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에 대한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다면 다음날 곧바로 ■■■에게 사과하려고 한 사실은 청구인의 이와 관련된 주장(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당시 친한 친구 사이인 ■■■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행동을 한 것이지만 정식 애인 관계가 아닌 친구사이에서 그러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서 사과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함)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청구인은 평소 이 사건 각 피해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지냈던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이 과거 일을 들추어내면서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청구인을 난처한 상황에 빠트리거나 불이익을 받게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당했던 행동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한 점

(3)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의 의미는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여 성행위, 유사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및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인의 행위가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각 피해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일으킬만한 언행이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위와 같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거나 어떠한 신고나 무대응 상태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해진 성폭력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거나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평소에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잘 한다거나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행해진 성폭력 피해가 상쇄될 수 없는 점

(5)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性認知 感受性, gender sensitivity ; 성별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낼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성폭력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농담을 하였다거나 태연하게 응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학폭위에서 심의 및 처분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피청구인은 학폭위의 처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의 제반 경위에 더하여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안의 중대성,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행위 후의 청구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어떠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끝.